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5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김태호·조승환·김종양

신성범 • 김성원 • 엄태영

박충권 · 정동만 · 서범수

박대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,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(안 제4조의3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		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		
	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		
	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		
	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		
	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		
	<u>여야 한다.</u>		